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1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, 통·리장, 읍·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제조항을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제5조제1항)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과 소		사회복지과 (940-4392)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사회담당	조 규 봉
	담 당 자	이 종 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신청절차) ①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, 통·리장, 읍·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	제5조(신청절차) ①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